

# 서식 I-9, 취업 자격증명서 근로자 안내서



U.S. Citizenship  
and Immigration  
Services

**1. 서식 I-9의 목적은?**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신규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채용을 허가해야 하며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채용 허가를 재입증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고용주는 반드시 서식 I-9를 이용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당신에게 섹션 1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. 지시문을 잘 읽고 필기체가 아닌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2. 누가 Form I-9을 보관하나요?** 고용주가 작성된 서식 I-9를 보관하지만 특정 정부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. 미연방국토안보부(DHS)와 법무부 산하 인권국 이민관련 불공정 고용관행 특별검사 사무소(OSC), 노동부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의 Form I-9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.

**3. 섹션 1의 내용을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?** 아닙니다. (1) 사회보장번호(Social Security Number), (2) 이메일 주소, (3) 전화번호는 선택 사항입니다. 단, 고용주가 E-Verify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. 또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면, E-Verify에서 해당 케이스와 관련해 중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**4. 섹션 2 또는 섹션 3을 작성해야 하나요?** 아닙니다. 섹션 2와 섹션 3은 고용주가 작성합니다.

**5. 다른 언어로 된 서식 I-9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?** 네, 가능합니다. 리코에서는 스페인어 서식 I-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푸에르토리코 이외 지역에서는 스페인어 서식을 고용자와 근로자가 영어로 된 서식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*6. 서식 I-9을 작성하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까?** 네, 가능합니다.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일반적인 예로서 서식 I-9를 번역하게 하거나 정보를 기입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. 서식을 번역하거나 근로자를 대신해서 서식을 작성한 사람은 서식 I-9에 있는 “대리 작성자 및/또는 번역사 확인란(Preparer and/or Translator certification)”을 작성해야 합니다. 하지만, 섹션 1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.

**7.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?** 고용주에게 “구비 서류 목록(List of Acceptable Documents)”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해당 목록은 서식 I-9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목록에 나와 있는

서류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특정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**8. 고용주에게 서류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하나요?**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일부 근로자들은 “목록 A”에 나와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해 신분 및 취업 자격을 증명합니다. 반면, “목록 B”에 나와 있는 신분 확인 서류 중 한 가지와 “목록 C”에 나와 있는 취업 자격 증빙 서류 한 가지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제출 가능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구비 서류 목록(List of Acceptable Documents)을 참조하십시오.

**9. 섹션 1을 작성하지 않고/않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** 서식 I-9의 섹션 1을 작성하지 않고/않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귀하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.

**10. 서식을 허위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?** 네, 그렇습니다. 근로자가 서식 I-9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**11.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체류 신분 또는 국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?** 서식 I-9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미연방이민귀화국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, USCIS) 전화 1-888-464-4218번으로 문의하십시오. 근로자가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, 체류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인권국 이민관련 불공정 고용관행 특별검사 사무소(OSC) 전화 1-800-255-7688(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) 또는 1-800-237-2515(TDD)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**12. 서식 I-9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?** I-9 Central ([www.uscis.gov/I-9Central](http://www.uscis.gov/I-9Central)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미연방이민귀화국(USCIS)에서는 근로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웨비나를 매달 제공합니다. 인권국 이민관련 불공정 고용관행 특별검사 사무소(OSC)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웨비나를 스페인어와 영어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웨비나 일정은 OSC 홈페이지 ([www.justice.gov/crt/about/osc](http://www.justice.gov/crt/about/osc)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